
2019년도 예산전용 보고

2020. 2.

노동민생정책관

2019년 예산전용 보고

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 -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
- 보고내용 :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
 - ※ 예산전용 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(목그룹 : 인건비-100, 물건비-200, 자본지출-400 등)

2019년 예산전용 내역

(단위:천원)

부 서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	승인일
				감	증		
소상공인 정책 담당관	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	사무관리비 (201-01)	900,000	-	755,000	1,655,000	'19.11.18
	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308-01)	3,000,000	755,000	-	2,245,000	

예산전용 사유

- 당초('18년 11월) 예산 편성 시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
경상보조금 15억 편성
-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시의 직접 사업을 통해 향후 3개년
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대두
 - '함께가게 의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', '우리농산물 공동구매'의 서울 전역
홍보, 동네가게를 위한 마케팅 성공사례 발굴 및 콘텐츠 제작 용역 등
-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75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고자 함